

부산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가단3212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김용욱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506,1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의 종전 권리관계

B은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해 오던 중, 2018. 9. 7. G은행에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주)A의 B에 대한 채권

(1) (주)A(이하 'A'이라 한다)은 2019. 6. 27. B과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에 관하여 '① 리스기간 60개월, ② 취득원가 73,603,630원(월 리스료 1,001,970원)'의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B이 위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A은 위 리스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2022. 5. 17. 현재 위 리스료 등 채권은 합계 57,991,684원(원금 52,287,208원, 이자 5,704,476원) 가량이었다.

다. 부동산의 매매

(1) B은 2021. 5. 4.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7,000만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 피고는 2021. 6. 25.까지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직후, (주)H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2,340만원, 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는 한편 이 사건 1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라. B의 파산

(1) B은 2022. 5. 30. 파산·면책 신청(부산지방법원 2022하단·하면431)을 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상 채무는 합계 1,645,666,901원이고, 재산목록상 재산은 시가 합계 112,789,779원(예금 107,927,168원, 보험환급금 2,302,541원, 기타 재산)이었다.

(2) B은 2022. 9. 6. 11:0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위 매매 당시 실질적으로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의 파산신청 시기가 위 매매일로부터 1년 가량 지난 시점이었으나, 파산신청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5억원 이상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 당시에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현금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행위는 파산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B과 피고의 관계, B의 파산신청의 내용, 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2) 갑제9호증, 을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2021. 5.경의 시세는 4억 9,000만원 가량이었던 사실, 당시 이 사건 1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원리금 등 합계 260,493,806원 가량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위 처분행위 당시의 시세 상당액에서 이 사건 1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229,506,194원(4억 9,000만원 - 260,493,806원)이 남고, 원고는 위 범위 내에서의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0,493,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9,506,1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